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시그니처자산운용(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라 한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법”이라 한다)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회사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회사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동 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감독기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① “자금세탁행위”란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란 공중협박 자금을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하거나, 이를 운반·보관하는 행위 및 이를 권유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란 금융회사등이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④ “보고대상 거래”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제2항의 금융거래 중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와 동법 제4조제1항과 제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금융거래를 말한다.
- ⑤ “신고대상 거래”란 범죄수익규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말한다.
- ⑥ “보고책임자”란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총괄하고 보고대상 거래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내부통제 체제

제4조(이사회)

이사회는 경영진이 설계·운영하는 자금세탁방지과 공중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금지(이하 “자금세탁방지등”이라 한다)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평가 및 조치결과 검토·승인 (연 1회 이상)
2. 내부통제 설계 및 운영상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경영진의 개선조치 요구 (수시)

제5조(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 운영 및 평가
2.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정책 및 이행계획 검토·승인
3.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규정 및 지침 제·개정안 승인
4. 내부통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 개선 및 조치결과 이사회 보고
5. 보고책임자 임면 및 그 임면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 앞 보고
6.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제6조(보고책임자)

① 보고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준법감시인으로 임면하되, 회사의 실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부서장급 이상 직급을 임명할 수 있다. 단,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영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보고책임자로 임명할 수 없다.

②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총괄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설계, 운영 및 점검
2.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 의무 수행 관련 업무 총괄
3.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장 앞 보고
4. 전자금융기술의 발전, 금융 신상품의 개발 등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 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조달(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 유형과 기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5.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관련 임직원 교육 및 연수 실시
6.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 보존 및 보안
7. 자체 여건을 감안한 일정 수의 전담직원 필요시 배치
8.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

③ 보고책임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게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충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부서에서 조사하거나 사실 확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신분보장) 보고책임자 등 자금세탁방지과 관련된 임직원은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조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독립적인 감사)

①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로서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
2.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으로부터 독립된 자

② 감사 수행주기는 연 1회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 범위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행수준과 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책, 절차 및 통제활동 등 설계·운영의 적정성
2.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정성
3.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원의 적정성

④ 감사는 자금세탁방지 감사수행 결과를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범위와 절차, 위반사항 및 사후조치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연수)

①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 및 관심제고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보고책임자 주관 하에 실시한다.

② 교육 및 연수는 직급 및 담당업무 등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 임직원에게 대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고책임자는 교육 실시 후 교육일자,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직원알기제도)

① 채용 담당부서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기 전 신원을 확인하고 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직원 채용 시 필수 확인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신원사항
2. 학력 및 자격사항
3. 경력사항 (경력직)

4. 자금세탁방지 관련 징계 사항 (경력직)

③ 채용 담당부서는 직원확인 및 검증을 통해 수집된 문서, 데이터 정보와 위험평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최소 3년에 1회 이상 평가 데이터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절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식별하고 확인·평가·이해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위험요소를 관리·경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 자체 및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
2.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새로운 기술 및 지급·결제 수단의 이용에 따른 것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

② 운용담당부서는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출시 전 자금세탁위험도를 측정하고 보고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신규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금세탁위험이 높을 경우 상품개발 부서는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당 상품을 변경 또는 보완하여 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위험관리수준 평가)

①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확인·평가·이해(이하 “위험평가등” 이라 한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들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위험평가등의 결과를 문서화
2. 전반적 위험의 수준과 위험의 완화를 위해 적용되어야 할 적절한 조치의 수준과 종류를 결정하기에 앞서 관련된 모든 위험요소들을 고려
3. 위험평가등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
4. 위험평가등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검사수탁기관의장에게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운영체계 구축
5. 제14조의 내용을 위험평가 등에 반영

② 회사는 자신의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관리하고 경감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경영진의 승인을 거친 정책·통제·절차(이하 “통제 등” 이라 한다)를 구비
2. 통제 등의 시행 여부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통제 등을 강화
3.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분야에 대해 강화된 조치 수행

③ 제11조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수립·운영 사항 반영

④ 회사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 작성·운영 사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주기적인 위험관리 수준 평가 시 그에 응해야하며 평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통보할 경우 통보한 방법 및 기한 등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장 고객확인 의무

제11조의3(정의)

① 고객확인이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한 자금세탁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저위험(표준위험)고객에 한하여 고객확인 및 검증시 간소화된 고객확인 의무(CDD)를 수행하고,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EDD)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이 「신탁법」상 신탁(이하 “신탁”이라 한다)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은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 및 수익자를 포함한다(금융회사등이 신탁에 대해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 신탁의 수탁자는 수탁인으로서의 지위를 금융회사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2조(위험식별)

① 회사는 위험에 기반한 고객확인 의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위험 : 특정국가의 금융거래 환경이 취약하여 자금세탁이 발생할 위험
2. 고객위험 :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 위험
3. 상품 및 서비스 위험 :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이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

② 회사는 국가위험을 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1. FATF가 성명서(Public Statement)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Higher-risk countries) 리스트
2. FATF가 이행 취약국가(Non-compliance)로 발표한 국가리스트

3. UN 또는 타 국제기구(World bank, OECD, IMF 등)에서 발표하는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국가리스트
 4. 금융회사등의 주요 해외지점등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있다고 발표하는 국가리스트
 5. 국제투명성기구 등이 발표하는 부패관련 국가리스트 등
- ③ 보고책임자는 특정 유형의 고객 군을 저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명시하는 고객위험 유형표(CDD Matrix)를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정할 수 있다. 고객위험 유형표가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고객은 고위험고객으로 간주된다.
1. FATF가 성명서(Public Statement)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 (Higher-risk countries) 소재 고객
 2. FATF 비회원국 소재 국가 고객
 3. 정치적 주요인물(PEP)
 4. 대표이사 또는 보고책임자가 정한 고객군(가상통화 취급업소 및 100억원 이상 고객자산가로서 보고책임자가 정한 고객 포함)
 5. 비영리단체
 6. 집합투자기구. 다만, 대한민국 및 FATF 회원국에 등록된 집합투자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신탁(집합투자기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은 제외)
 8. 카지노사업자 및 가상통화 취급업소
 9. 환전상 (금융회사등 제외)
 10. 대부업자 (금융회사등 제외)
 11. 귀금속 판매상
 12.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의 허가를 받은 자
 13.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14. UN(United Nations) 결의 제1267호(1999년) · 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 · 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이하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라 한다)
 15. 비거주자(다만,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상품 및 서비스를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상품 및 서비스로고려하여야 하며,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양도성 예금증서(증서식 무기명)
2. 환거래 서비스
3.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성이 높은 비대면 거래
4.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서 고위험으로 판단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

제13조(적용대상)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거래 시에는 고객의 신원 및 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투자일임거래
2. 대출약정 등 계속적 금융거래 개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기존고객에 대하여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시행일 2008년 12월 22일) 이후 위험평가를 통해 자금세탁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실명확인대상 금융거래시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인수·합병을 통해 취득한 고객에 대해서도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인수기관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및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고객확인 및 검증을 수행한 관련기록을 입수하고, 피인수기관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 보고법에 따른 고객확인 의무 수행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경우
2. 제1호의 고객확인 및 검증 관련 자료에 대한 샘플링 테스트 등을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이행시기)

- ① 고객확인 의무는 원칙적으로 당해 금융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한 고객이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고위험 고객의 경우 1년, 중·저위험 고객의 경우 3년 단위로 고객확인 의무를 재수행 하여야 한다.
- ③ 고객확인 및 검증을 통해 수집된 문서, 데이터 및 정보와 영업점이 파악하고 있는 고객확인정보 및 위험평가 결과를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고객확인 원칙)

- ① 고객과의 금융거래 시 문서나 질문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확인하고,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 ② 고객과 금융거래 시 거래관계의 목적 및 성격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법인 및 단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신탁 및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법인·단체' 이라 한다] 고객에 대해서 영위하는 사업의 성

격, 지배구조 및 통제구조 등을 이해하여야 한다.

제15조(신원확인)

- ① 개인고객에 대한 필수 고객 확인사항(신원정보)은 다음과 같다.
 1. 성명, 실명번호
 2. 주소 및 연락처(외국인 비거주자는 실제 거소지 또는 연락처)
 3. 국적(외국인)
 4. 생년월일 및 성별(외국인 비거주자)
 5. 직업 또는 업종 등 회사가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 ② 고위험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필수 고객 확인사항(신원정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며, 보고책임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업종
 2.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
 3. 거래목적
 4. 직장명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명)
- ③ 개인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히거나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관련 정보 등을 이용하여 그 실제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법인(단체) 고객에 대한 필수 고객 확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단체)명, 법인번호
 2. 본사 및 사업장 주소 및 소재지(외국법인 경우 연락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이사 등 고위 임원에 대한 정보 : 개인고객의 신원 확인 정보에 준함
 4. 업종(영리법인의 경우)
 5. 회사 연락처
 6.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의 경우)
 7. 신탁의 경우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 및 수익자에 대한 신원정보
- ⑤ 고위험 법인고객에 대해서는 필수 고객 확인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며, 보고책임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법인 구분정보, 상장정보, 설립일, 홈페이지 등 회사에 관한 기본 정보
 2. 상장정보
 3. 회사관련 정보
 4. 거래자금의 예상 원천 및 거래목적
 5. 회사의 특징이나 그에 대한 세부사항

⑥ 법인(단체)고객과 거래 시에는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관련 정보 등을 이용하여 그 실제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법인 고객의 주주등 실제 소유자의 실체가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주 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자연인)을 확인할 수 있다.

⑧ 제6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다른 단체의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실제 소유자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
3. 다른 금융회사등(카지노 사업자,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대부업자 제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⑨ 고객확인 검증 시 활용되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관리하며, 검증시 고객이 제시한 정보와 회사가 확인한 정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6조(제3자를 활용한 고객확인)

① 회사는 필요한 고객확인을 직접 수행하며 제3자를 활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요하며, 이 경우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고객공지 및 거래거절)

① 회사는 고객에게 고객확인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고객확인제도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래가 거절될 수도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고객확인 및 검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과의 금융거래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심스러운거래 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누설금지)

회사는 고객의 자금세탁행위등이 의심되나, 고객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비밀누설의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확인 절차를 중단하고, 법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고객자산관리 고객)

- ① 고객자산관리 고객이란 거래고객 중에서 금융자산이 20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 100억원 이상인 고객을 말한다.
- ② 회사는 고객자산관리 고객의 계좌 신규개설 및 고객자산관리 대상고객 신규 편입시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고, 보고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며 해당부서에서는 고객자산관리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 ①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란 현재 또는 과거(사임 후 1년 이내)에 외국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가족 또는 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아래 각 호의 사람들을 말한다.
 1. 외국정부의 행정, 사법, 국방, 기타 정부기관의 고위관리자
 2. 주요 외국 정당의 고위관리자
 3. 외국 국영기업의 경영자
 4. 왕족 및 귀족
 5. 종교계 지도자
 6.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체 또는 단체
 7.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혈연 또는 결혼에 의한 친인척
 8.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공식적으로 특별한 금전거래를 수행하는 자
- ② 해당부서는 고객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에 해당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고,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금세탁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여야 한다.
- ③ 해당부서는 거래고객에 대해 정치적 주요인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제20조(비영리단체)

- ① 비영리단체란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학술, 종교, 자선, 문화, 교육, 사회사업 등의 목적으로 기금 등(현금, 여행자 수표, 자기앞 수표, 우편환, 환어음 등 형태와 수단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을 모집 또는 사용하는 단체를 말한다.
- ② 회사는 비영리단체와의 거래 시 아래 각 호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고 보고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1. 비영리단체 설립목적
 2. 주요 활동지역
 3. 조직체계(구조)

4. 다른 비영리기관과의 제휴현황

제21조(FATF 지정 위험국가)

① FATF 지정 위험국가란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지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하는 국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리스트에 속한 국가를 말한다.

1. FATF가 성명서 (Public Statement)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 (Higher-risk countries) 리스트

2. FATF가 이행 취약국가 (Non-compliance)로 발표한 국가리스트

② 회사는 고객의 국적이 FATF 지정 위험국가에 해당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고, 보고책임자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2조(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

①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2.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② 회사는 공중협박 자금조달 고객과의 금융거래 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거래를 거절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수행하고 금융위원회의 허가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기존고객이 공중협박 자금조달 고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공중협박 자금조달 고객과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장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제23조(거래모니터링)¶

① 해당부서는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될 경우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거래패턴의 모니터링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의 거래이력 비교·검토

2. 과거 자금세탁 사례의 정형화를 통한 고객 거래정보와의 비교·검토

3. 고객 거래 정보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도 측정 및 거래내역 평가

③ 보고책임자는 모니터링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된 건에 대하여 최종판단 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대상)

① 의심스러운 거래 의무보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의심거래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한 범죄수익 수수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4.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 의한 공중협박 자금 수수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공중협박 자금조달 금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 ②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의로 보고할 수 있다.

제25조(보고 및 신고)

- ① 해당부서는 의심스러운 거래 발생 시 즉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가 신고대상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내부보고를 받은 보고책임자는 내부보고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방법)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 앞 보고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먼저 전화 또는 Fax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내부보고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보고양식에 따라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 등에 의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및 송부 시 보고내용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관련자료 보존

제26조의2 (보존기간)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존대상)

- ① 고객확인 및 검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대리인, 실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 증표 사본 및 고객신원 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문서 및 자료
 2. 고객신원정보 이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문서 및 자료
 3. 고객확인업무 이행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 ② 고객과의 금융거래 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거래일자, 통화종류, 거래금액을 포함한 자료관련 거래신청서, 약정서 및 업무서식
 2. 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자료 등
- ③ 내·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해야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사본 또는 내부결재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2.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3. 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자료
 4. 고액현금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5.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자료
 6.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 ④ 기타자료는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운영·점검과 관련된 자료
 2. 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3. 자금세탁방지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등

제28조(보존방법)

- ① 보존대상 문서 및 자료는 원본, 사본 등 다양한 형태로 보존할 수 있으며 회사 내부 관리절차에 따른다.
- ② 회사는 보존 자료가 다른 금융거래 자료와 구분되어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하

여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해당 자료를 요구할 경우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제29조(보존장소)

보존대상 자료는 본사에서 일괄 보존하되 부득이한 경우 보고책임자의 판단으로 그 밖의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제6장 비밀보장 및 면책

제30조(보고사실 누설금지)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신고한 경우 관련된 금융거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고·신고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심스러운 거래
2. 범죄수익규제법 제5조제1항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
3.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5조제2항 (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동법 제4조제3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동법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

제31조(금융거래정보 우선제공)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27조 및 외국환 거래법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에 우선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2. 금융정보분석원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4. 금융정보분석원의 관계행정기관장, 신용정보집중기관장에 자료제공 요청
5. 회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제공요구에 따라 외국환거래 및 그 밖의 대외 거래를 이용한 금융거래관련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제32조(면책)

① 임직원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 보고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외한다.

제33조(제재)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4조에 따른 허위보고, 보고사실의 누설
2. 범죄수익규제법 제5조,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무위반 및 신고사실 누설
3.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받지 아니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와의 금융거래
4.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7조에 따른 금융거래 미보고 및 감독 명령 등 거부

제7장 보 칙

제3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자금 세탁방지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시행령」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

고객 확인사항(CDD)

20__년 __월 __일

| | | | |
|--------|---|-----|-----|
| 결 재 | 계 | 책임자 | 부서장 |
| | | | |

1. 법 인 (차주)

| | | | |
|-----------------|---------|--------|------|
| 법 인 명 | 업 종 | | 대표번호 |
|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 홈페이지 주소 | | |
| 본 사 주 소 | | | |
| 사업장주소 | | | |
| 대 표 자 정 보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국 적 |
| | 주 소 | 연락처 | |

2. 개인/개인사업자 (보증인)

| | | |
|-----------|-----------|--------------|
| 성 명 | 성 별 | 국 적 (외국인) |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연 락 처 |
| 주 소 | | |
| 개 인 사 업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 사 업 장 주 소 | |

3. 운용부서 기재사항

| | |
|-----------------------|--|
| 요주의리스 트 고 객 여 부 | <input type="checkbox"/> 대상 아님 <input type="checkbox"/> 대상고객 ※고객, 대표자, 주요주주, 실소유자가 대상고객인 경우 EDD 수행 |
| 고 객 평 가 | <input type="checkbox"/> CDD 고객 <input type="checkbox"/> EDD 고객 |

4. 증빙서류 첨부

| NO | 서 류 명 | 첨부 체크 | 비 고 |
|----|-------------------------------|--------------------------|-----|
| 1 | 주민등록증, 여권 등(개인) | <input type="checkbox"/> | |
| 2 | 사업자등록증 | <input type="checkbox"/> | |
| 3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등기입원 현황이 포함된 분기보고서 | <input type="checkbox"/> | |
| 4 | 정관(비영리기관) | <input type="checkbox"/> | |

※대한민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제 2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독·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카지노 사업자 제외), 주권 상장법인의 경우 증빙서류 징구 생략가능

| | |
|----------|-----|
| 준법감시인 확인 | (인) |
|----------|-----|

고객 확인사항(EDD)

20____년 ____월 ____일

| | | | |
|--------|---|-----|-----|
| 결 재 | 계 | 책임자 | 부서장 |
| | | | |

1. 법 인 (차주)

| | | | |
|----------------------|--|---------|--|
| 법 인 명 | | 설 립 일 | 년 월 일 |
| 상 장 정 보 | <input type="checkbox"/> 코스피 <input type="checkbox"/> 코스닥 <input type="checkbox"/> 그 외 | 법 인 정 보 |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
| 주요주주/대주주 (10% 이상) | | | |
| 거 래 목 적 (자 금 용 도) | | 자 금 원 천 | |

2. 개 인/개 인사 업자 (보 증 인)

| | | | | | |
|----------------------|--|----------|--|--------|--|
| 성 명 | | 직 업 | | 직 위 | |
| 직장명(회사명) | | 업 종(사업자) | | 직장 연락처 | |
| 직 장 주 소 | | | | | |
| 거 래 목 적 (자 금 용 도) | | 자 금 원 천 | | | |

3. 비영리법인

| | | | |
|----------------------|--|---------------------|-------|
| 법 인 명 | | 직 위 | 년 월 일 |
| 설 립 목 적 | | 주요 활동지역 | |
| 조직체계(구조) | | 다른 비영리기 관 제 휴 현황 | |
| 거 래 목 적 (자 금 용 도) | | 자 금 원 천 | |

4. 운용부서 의견

회사의 특징이나 그에 대한 세부사항

| | |
|----------|-----|
| 준법감시인 확인 | (인) |
|----------|-----|